

忠清北道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1. 提 出 者 : 忠清北道知事

2. 提出日字 및 回附日字

가. 提出日字 : 1992年 4月 28日

나. 回附日字 : 1992年 4月 29日

3. 提案理由

'91年度 忠清北道 機構改編에 따른 局의 變更 및 一部局 業務調整으로 改正, 圓滑한 調整委員會 運營

4. 主要骨子

- 當然職委員은 “各 局長과 企劃擔當官”을 “各 局長과 企劃擔當官, 公報官”으로 改正
- 別表中 道政調整委員會에서 代行하는 委員會 局別 業務調整

5. 檢討意見

- 道政의 基本的인 計劃 및 施策과 法令 또는 其他規定에 依한 地方委員會의 機能에 關한 事項에 對하여 諮問, 審議, 研究, 議決하기 爲하여 道에 道政調整委員會를 두고 委員은 當然職委員과 必要時 委囑委員을 두게되며, 當然職 委員은 副知事, 企劃管理室長 및 各局長과 企劃擔當官이 되고 委囑委員은 分別別 關聯會議時에 10人 以內로 構成하고 있는바

○ 91년 忠淸北道 機構가 改編됨에 따라 局의 變更 및 業務調整으로 道政 調整委員會 委員의 補強과 法令, 其他의 規定에 依하여 道가 設置 運營토록한 委員會中 道政調整委員會가 處理할 事項을 調整하여 圓滑한 道政調整委員會가 運營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當然職委員을 當初 “各 局長과 企劃擔當官”을 “各 局長과 企劃擔當官, 公報官”으로 改正하고, 道政調整委員會에서 代行하는 委員會의 室, 局別 業務를 調整코자 하는것으로서 忠淸北道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은 改正 施行토록 함 이 妥當하다고 料料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 상 말씀을 드리겠는데 꼭 발언하실때에는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고 또 속기록을 작성하는데 상당히 혼동이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순서대로 질서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번에 한번 검토된 사항이라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아실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참고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질의 하실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정 조정위원회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2.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 21분)

○ 위원장 김연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출하신 관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지방재정법 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91년도에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도의회의 의결은 얻어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배각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